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1244 손해배상(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방수란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연 담당변호사 천동준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담당변호사 박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이혜윤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5.부터 2026.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4.부터 2026.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8,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미국의 E, F, G 등과 같은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거나 취재를 하는 등의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전문 사진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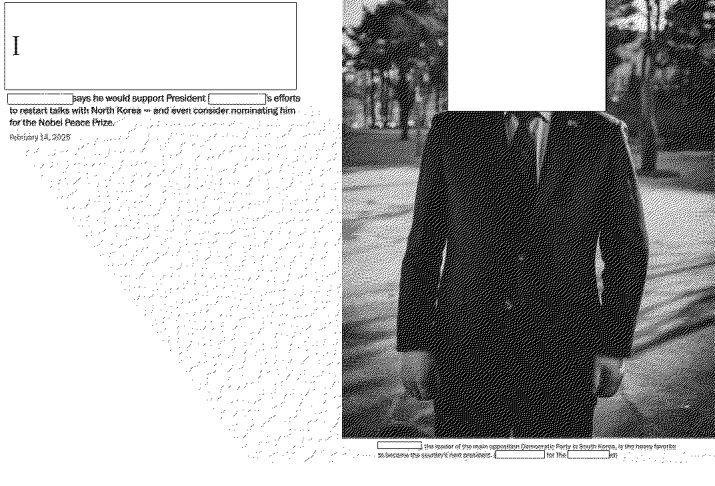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가 촬영한 H 대통령¹⁾의 사진 및 피고들의 사용



1) 원고는 F의 의뢰를 받아 아래와 같은 사진(이하 '제1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고, F는 2025. 2. 14. 제1 사진 등을 사용하여 "I"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제1 사진(갑 제5호증)	제 1기사 중 제1 사진이 포함된 부분
	

2) 피고 B는 2025. 2. 14. 자신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J, K, L, M에 제1 기사를 인용하며 이를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제1 사진을 총 5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3) 피고 C는 2025. 2. 15. 자신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J, M에 제1 기사를 인용하며 이를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제1 사진을 총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라. 원고가 촬영한 N의 사진 및 피고 C의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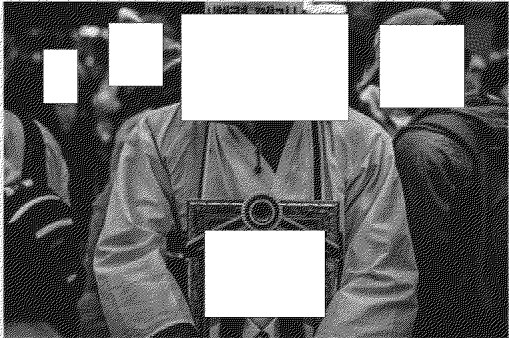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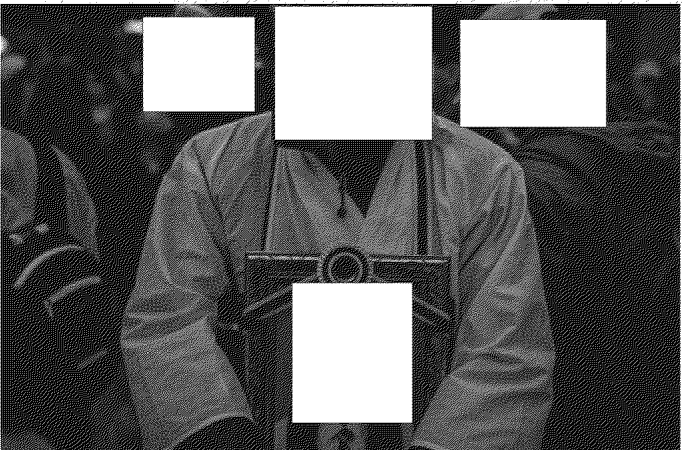
1) 원고는 2015년경 이른바 'O 침몰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을 촬영하며 이를 'P'에 출판하였는데, 당시 위 사고의 유족인 N가 촬영된 사진(이하 '제2 사진'

1) 촬영 당시에는 Q정당 대표였다.



이라 한다) 등을 촬영하였고, 제2 사진은 R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2) 위 N는 2025. 6. 24. 피고 C의 시민기자로서 피고 C 홈페이지를 통하여 "S"라는 제목으로 기사(이하 'N의 기사'라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당시 기사 중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제2 사진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서 "T"라는 문구를 제2 사진의 아래에 기재하였고, 위 기사는 M와 다음에도 게시되었다.

제2 사진(갑 제44호증)	N의 기사 중 일부(갑 제45호증)
	이번 기회에 부디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우리 [] 유가족과 시민활동가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마을속에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16, 26, 41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 제1 사진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무단으로 제1 기사를 인용하는 기사를 게시하면서 제1 사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



의 행위는 원고의 제1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

나) 또한 피고들은 제1 사진을 사용하며 저작자인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제1 사진에 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C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에 N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제2 사진의 저작자인 원고의 이름이 아닌 N의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제2 사진에 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의 각 침해행위 1회당 1,000,000원의 손해배상 및 제1 사진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각 3,000,000원, 제2 사진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4,000,000원을 구한다).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 사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기사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저작물성 부존재

제1 사진은 인물의 초상사진으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니고, 정치인을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누가 그 대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으며, 제2 사진은 당시 사회적 상황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시위 중인 인물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 2 사진에 작성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에 기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피고들은 제1 사진을 보도를 위하여 제1 기사를 섬네일(미리보기 이미지) 형식으로 소개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 사진이 포함된 기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 제26 내지 28조에 정해진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1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제1 사진을 제1 기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공익상 목적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고, 피고들의 기사가 제1 사진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거나 대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1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부존재

가) 피고들은 제1 사진이 포함된 제1 기사를 인용하며 그 기사의 작성 주체인 F를 표시하며 그 출처를 표시함과 동시에 원고가 제1 사진의 저작권자임을 알 수 있는 기재 부분까지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1 사진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 사진의 사용은 시민기자로서 피고 C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한 N가 한 것으로, 피고 C는 N의 사용자도 아니며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4)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주장

제1 사진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원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성과 등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와 유사한 상품의 판매를 두고 시장에서 대체되거나 직접 경쟁관계에 놓이는 당사자 등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2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사진은 촬영자인 원고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도 인정된다.

가) 제1 사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F로부터 '당시 H Q정당 대표에 관한 인터뷰 기사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U"와 같은 제목의 기사의 취지에 부합하게 할 목적으로 현 대통령인 H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제1 사진을 촬영하면서 인물이 사진의 중심이 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나무가 심어진 마당을 배경으로 선택하였고, 조명과 빛의 노출을 조절하여 배경의 색채와 H 대통령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상체 전부와 하체 일부를 촬영하며 H 대통령이 가진 왼팔의 굵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구도를 선택하였고,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전체적인 색채의 톤과 선명도를 조절하였다.

나) 제2 사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른바 'O 침몰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당시 유족들의 시위가 있었던 장소에 찾아가 N가 흰옷 입은 채 자녀의 영정사진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피사체로 선택하였다. 원고는 유족인 N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과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조명과 빛의 노출을 조절하였고, N를 화면 중심에 두는 구도를 선택하였으며,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인물은 선명도를 유지하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보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저작권재산권 침해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제1 사진이 포함된 제1 기사를 인용하는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들 행위(이하 '피고들 사용행위'라 한다)는 제1 사진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저작권법 제26 내지 28조에 기한 저작재산권 제한 주장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용행위가 저작권법 제26 내지 28조에 정해진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방송사업 또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피고들 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독료·광고료 등의 수익을 얻으므로, 피고들 사용행위는 영리적인 성격을 갖는다.

②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의 목적과 정도를 벗어나서 사용하면 이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주로 제1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제1 사진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제1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인용의 목적과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기한 저작재산권 제한 주장

(1) 관련 법리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2)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2) 현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한다.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포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용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피고들 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독료·광고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 사용행위는 영리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제1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본래 제1 사진의 용도였던 보도사진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 사진은 기사에 사용되기 위한 사진저작물로서 이를 접하는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감성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 사진이 사용된 기사의 성격이 어떠한가와 별개로, 단순히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 사진은 기사의 시각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질적 비중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의 제목과 목적에 비추어 제1 사진은 기사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들을 다양한 방송사·신문사에 판매하여 저작권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별다른 저작권료 지급 없이 제1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위 사진들의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관행이 유지되는 경우 사진 저작물 사용허락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라.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가) 제1 사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 기사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면서 제1 사진 아래쪽에 기재된 "V"를 그대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재는 제1 사진이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1 사진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사진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의 홈페이지에 N가 기사를 작성하며 사용한 제2 사진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C는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N의 사용자도 아니며, 그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의 기사가 게시된 것은 피고 C의 플랫폼을 통한 것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N의 기사를 통하여 피고 C는 직·간접적인 이득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점, N의 기사 하단을 보면, "Copyright © C.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피고 C가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제2 사진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제1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각 침해한 사실, 피고 C는 제2 사진이 포함된 N의 기사를 게시하며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 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사진을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사용하게 할 경우 통상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피고들의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송사·신문사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작물 사용허락 비용은 사용되는 유형·노출도 등에 다양하게 산정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 사진에 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은 피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또는 배포권) 침해행위로 인하



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기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그 사용 유형 및 노출 정도, 장수에 따라 200달러에서 1,600유로 정도의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의 제1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각 5회 및 3회지만 제1 사진이 갖는 비중과 중요성이 작지 않은 점, ③ 방송사·신문사가 동일한 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게시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해당 뉴스 방송·기사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들의 침해행위 경위·기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금을 3,000,000원, 피고 C의 손해배상금을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기간,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 건수, 침해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금을 2,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피고 C는 손해배상금 4,000,000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B는 2025. 9. 5.부터, 피고 C는 2025. 9. 4.부터 각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일준



별지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1. 피고 B: 2025. 2. 14.자 각 기사

- 기사 제목: W

피인용(이용)저작물	증거	침해형태	url
이 사건 1 사진	갑 제15호증	복제/공중송신(전송)	(인터넷주소 1 생략)
	갑 제26호증의 1 (J)		(인터넷주소 2 생략)
	갑 제26호증의 2 (K)		(인터넷주소 3 생략)
	갑 제41호증의 1 (L)		(인터넷주소 4 생략)
	갑 제41호증의 2 (M)		(인터넷주소 5 생략)

2. 피고 C: 2025. 2. 15.자 기사

- 기사 제목: X

피인용(이용)저작물	증거	침해형태	url
이 사건 1 사진	갑 제16호증	복제/공중송신(전송)	(인터넷주소 6 생략)
	갑 제42호증의 13)		(인터넷주소 7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M)		
	갑 제42호증의 2		(인터넷주소 8 생략)
	(J)		

피고 C의 저작권격권 침해행위

피인용(이용)저작물	증거	침해형태	url
이 사건 5 사진	갑 제45호증의 1	복제/공중송신(전송)	(인터넷주소 9 생략)
	갑 제45호증의 2		(인터넷주소 10 생략)
	(M)		(인터넷주소 11 생략)
	갑 제45호증의 3		(인터넷주소 11 생략)
	(J)		

끝.

- 3) 갑 제42호증의 1, 2 기사는 피고 C가 자사 뉴스 페이지에 게재한 갑 제16호증의 기사를 M와 J 등 포털을 통하여 게시한 것으로, 해당 기사들의 내용은 갑 제16호증과 동일하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5. 9. 5. 문제된 기사의 사진을 변경하여 현재는 H 당시 대표의 다른 사진으로 교체되어 있으나 기사 수정 이전에는 동일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